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6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3
-----------------	---

1.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3
---	---

※ 참고자료

1.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범위 및 내용	7
--------------------------------------	---

2.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예산 현황	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학생, ② 한부모가족 중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 ③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함¹⁾²⁾.

< 교육비 지원 기준 및 내용 >

교육비	지원 기준	지원 내용 ³⁾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① 기초·한부모·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②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학비 전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무상급식 제외)		▪ 보호자 부담금(중식) 전액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간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인터넷통신비

자료: 교육부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비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추가함으로써, 2024년 합계출산율⁴⁾이 0.75명에 불과한 등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자녀 양육 관련 교육비 부담을 다자녀가정까지 포괄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국가 정책에서도 다자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 및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수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합계출산율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구체적인 시·도별 지원내용과 예산 현황은 '참고자료1: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범위 및 내용'과 '참고자료2: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예산 현황' 참조.

4)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첫째,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저소득층 지원 취지와 개정안이 지향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취지 간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현재 교육비 지원 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되고 있어 지원 규모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다자녀 가정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들 간 지원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6년 기준 교육비 지원 예산에서 방과후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약 30만명인데 반면⁵⁾, 2024년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미성년 자녀 수는 약 45만명으로 추계됨에 따라,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행정구역별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3자녀 이상
전국	4,517,125	1,994,419	2,106,188	380,769	31,331	4,418	416,518
읍부	474,535	200,717	220,559	48,044	4,551	664	53,259
면부	233,930	104,565	101,153	24,587	3,055	570	28,212
동부	3,808,660	1,689,137	1,784,476	308,138	23,725	3,184	335,047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 수 : 416,518가구

※ 셋째 이상 미성년 자녀 추계 : 380,769명+(31,331가구×2명)+(4,418가구×3명) = 456,685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5) '참고자료2: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예산 현황' 참조.

□ 셋째, 개정안은 현행 규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11까지는 교육비 지원의 절차·정보 제공·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교육비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설계된 조문 구조임. 이와 같은 체계 하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이 교육비 지원 제도에 추가될 경우, 현행 절차·조사·정보제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거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현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구의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하여 시도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교육 제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 있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

* '24. 셋째 이상 미성년 자녀(추계) : 약 45만명/ '25. 저소득층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학생수 : 약 30만명

- 또한, 저소득층 지원 법령에 출산 장려 목적의 조문을 포함하는 경우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별도 조항 신설 또는 독립 근거 마련이 적절

○ 서울시교육청

- 제60조의5(교육비 지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 지원은 성격이 상이하여 정합성이 부족하므로 별도 조항 신설 또는 독립 근거 마련이 적절
- 서울 조례는 다자녀를 둘 이상 자녀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조례와 충돌 가능성이 있고,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미추진 상황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선행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1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범위 및 내용⁶⁾

지역	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교)	급식비 (무상급식 제외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법정, 60% 학교장	법정, 60%	법정, 80% 학교장	-	법정, 60%
부산	법정, 60%	-	법정, 90% 학교장	의료	법정, 학교장
대구	법정, 60% 학교장	-	법정, 80% 학교장	기초	법정, 학교장
인천	법정, 60% 학교장	-	법정, 90% 학교장	-	법정, 60% 학교장
광주	-	-	법정, 80% 학교장	주거	법정
대전	법정, 80% 학교장	-	법정, 80% 학교장	생계, 의료, 한부모, 차상위	법정
울산	법정, 60% 학교장	법정, 135%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세종	-	기초	법정, 80% 학교장	기초	법정
경기	법정, 60% 학교장	법정, 60% 학교장	법정, 80% 학교장	의료	기초, 한부모
강원	법정, 80% 학교장	-	법정,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한부모	법정
충북	-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충남	법정, 70% 학교장, 다자녀	법정, 60% 학교장, 다자녀	법정,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법정
전북	법정, 68% 학교장, 다자녀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한부모	법정
전남	법정, 60% 학교장	-	법정, 100% 학교장	법정	법정, 학교장
경북	법정, 68% 학교장, 다자녀	법정, 80% 학교장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생계	법정, 60%
경남	-	-	법정, 80% 학교장	-	법정
제주	-	-	법정, 80% 학교장, 다자녀	기초	법정

- ※ 고교학비 및 급식비는 각각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임
- ※ 법정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를 의미
- ※ '00%'는 기준 중위소득 00%이하 가구 학생을 의미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기타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

6) 자료: 교육부

참 고 2

'26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예산 현황

(’26.2월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시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서울	1,134	3,220	202	193	24,032	12,232	-	-	12,750	2,693
부산	135	199	-	-	23,563	11,576	365	511	13,136	3,034
대구	300	894	-	-	41,476	12,928	2,102	1,541	7,820	1,645
인천	100	399	-	-	17,415	5,305	-	-	14,620	3,377
광주	-	-	-	-	26,677	5,052	205	315	7,857	1,815
대전	288	1,343	-	-	5,758	4,035	300	388	5,813	1,228
울산	58	79	8	10	11,387	5,554	230	322	3,300	762
세종	-	-	210	250	1,140	490	170	248	600	139
경기	549	2,778	110	146	19,412	11,647	2,700	2,700	25,250	5,833
강원	4	4	-	-	4,330	2,382	500	650	6,300	1,455
충북	-	-	-	-	13,464	2,431	400	560	5,400	1,140
충남	191	580	65	26	7,969	2,553	400	557	5,100	1,178
전북	925	622	-	-	21,509	8,044	500	769	8,862	1,872
전남	24	176	-	-	12,782	3,753	300	477	6,800	1,571
경북	855	1,900	148	695	46,750	14,042	800	1,125	12,500	2,888
경남	-	-	-	-	24,581	9,832	-	-	13,932	3,218
제주	-	-	-	-	2,000	797	120	173	2,720	628
합계	4,563	12,194	743	1,320	304,245	112,653	9,092	10,336	152,760	34,476

7) 자료: 교육부